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 응급장비 설치구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8조)
- 다. 서식을 규칙으로 이동 규정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5,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14.~2.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생 략)</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u> <u>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u> <u>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u> <u>을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 <u>1.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u> <u>2.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u> <u>금액은 2백만원 이내</u> <u>3.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u> <u>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u> <u>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u> <u>같다.</u></p>	<p><u>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u> <u>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u> <u>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u> <u>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u> <u>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 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예산 : 15,000천원
 - 1) 전기설비 안전점검비 : 5,000천원
 - 2) 응급장비 구입비
: 응급장비 200개×기업 10곳×50퍼센트 = 10,000천원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